

의안번호	2201028
의 퇴 인	윤준병의원
회 답 일	2024. 6. 27.
추계번호	24B134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1조제2항제4호 부터 제6호까지 신설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선택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를 포함함(제2항) <u>4. 전락작물직접지불제도</u> <u>5.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u> <u>6. 경축순환직접지불제도</u>	의무규정
3	안 제36조제1항(정보 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 기 위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 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하여 <u>공익 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u> (제1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1조제2항제4호 부터 제6호까지 신설(선 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전락작물직접지불제도(제4호) • 미대상: 현행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제5호) 경축순환직접지불제도(제6호)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 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36조제1항(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 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법령에 따라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 스템을 운영중이며, 개정안은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 [참고자료 4]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탄소중립 직접지불제도, 경축순환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각 직불제도 도입 및 직불금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안 제21조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 재정수반요인별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음

가.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안 제21조제2항제4호 신설)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한 ‘전략작물직불제도’¹⁾를 시행중이며, 개정안은 이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 (지원목적)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에서 식량자급률의 증진, 벼 재배 면적 조정 등을 위해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차등 지원
 - (전략작물) 밀, 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
 - 예산: 1,865억원('24년), (~'22년까지 논활용직불)

※ [참고자료 1] 농업직불제 개요 및 [참고자료 2]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개요 참고

[표 1]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예산 현황: 2021~2024년

(단위: 백만원)

	2021	2022	2023	2024
공익기능증진직불 (1071-302)	2,360,984	2,360,984	2,726,884	2,870,184
- 전략작물직불 (중전 논활용직불)	47,300	46,200	112,100	186,45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 2024.1.

1) 법 제21조(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① ~ ② (생략)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법 시행령 제42조(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들에게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이하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전략작물”이란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논에서 재배하는 작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을 말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나.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안 제21조제2항제6호 신설)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프로그램, 즉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 도입 검토중
 - (지원대상) 농업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종·축산분야의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검증되고 이행이 용이한 활동을 중심으로 지원
 - ('23년) 도입안 마련, ('24~27년) 시범사업 시행 및 프로그램 도입 기반 마련
 - ※ [참고자료 3] 탄소중립직불제 도입 방향(안)
-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탄소중립직접지불제는 시범사업 후 본사업 시행 예정으로, 본사업 비용추계를 위해 필요한 사업물량 등이 확정되지 않아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다. 경축순환직접지불제도(안 제21조제2항제6호 신설)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²⁾는 경축순환농업을 “농업생산의 부산물(가축분뇨, 볏짚, 버섯 배지 등)을 농업생산 내부에서 다시 활용함으로써 농업 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 내 농축산업간 연계를 높여 지역 순환구조를 확립하고자 하는 농업”³⁾⁴⁾으로 정의
 - (축산부문) 가축분뇨 퇴액비를 경종농가에 환원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개선에 기여. 경종부문으로부터 쌀겨와 볏짚 등 부산물을 공급받아 사료수입을 줄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 가능
 - (경종부문) 필요한 양분을 화학비료 대신 퇴액비로 공급함으로써 미생물을

2)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대통령 소속으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 「지역자원 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안)」, 2019. 12. 3., 41~42쪽

4) 참고로 정학균 등은 경축순환농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 바 있음

- 경축순환농업: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퇴·액비화하여 경종농가 작물 양분으로 공급하고, 경종농가에서 발생한 농업부산물과 경종농가에서 재배한 조사료를 사료화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함으로써 환경 부담을 줄이고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가 서로 이익을 얻는 농업

(자료: 정학균·임영아·강경수, 「경축순환농업 실태 분석과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 R89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10., 21쪽)

활성화하여 지력 증진 등 토양개량에 기여. 이는 농약사용 감소로 이어져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 가능

- 그러나 농림축산식품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경축순환직접지불제도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즉 비용추계를 위해 필요한 지원대상, 지급단가, 사
업물량 등이 확정되지 않아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참고자료 1] 농업직불제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2019년 이전 농업직불제

종 류	지급 기준 및 지원 단가
쌀고정직불제 (‘05~’19) (논농업직불: ‘01~’04)	○ 지원목적: 쌀 생산량·가격과 상관없이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소득 지원 ○ 대상농지: ‘98~’00년 사이에 논농업(벼, 미나리, 왕골, 연근 재배)에 이용된 농지 ○ 지원대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제 경작(타작물 재배, 휴경 포함)하는 농업인 등 ○ 지원단가: 평균 100만원/ha
쌀변동직불제 (‘05~’19) (쌀소득보전: ‘03~’04)	○ 지원목적: 쌀 농가에 직불금 지급하여 쌀값하락으로부터 농업인 소득감소분 보전 ○ 대상농지: 고정직불금 대상농지 중 논에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하는 농지 ○ 지원대상: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충족하는 농업인 등 ○ 지원단가: (목표가격(214,000원/80kg) - 수확기쌀값) × 0.85 - 고정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제 (‘04~’19)	○ 지원목적: 농업생산성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지에 대해 직불금 지원 ○ 대상지역: 육지지역은 읍·면의 경지율이 22%이하이면서 경지경사도 14%이상인 농지면적이 50%이상인 법정리, 도서지역(제주도 포함)은 읍·면의 모든 법정리 ○ 대상농지: ‘03~’05년간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 ○ 단가: 농지 65만원/ha, 초지 40만원/ha(국고80%, 지방비20%)
발농업 직불제 (‘12~’19)	<발고정> ○ 지원목적: 밭 이용 농지에 직불금 지급하여 밭농가 소득보전 및 자급률 제고 ○ 대상농지: 지목과 상관없이 ‘12~’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지원대상: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지급단가: 밭고정 55만원/ha <논이모작(논활용직불)> ○ 지원목적: 6월 말까지 수확 가능한 이모작 품목 재배시 직불금 지급하여 자급률 제고 ○ 대상농지: 쌀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논과 ‘98년 이후 조성되어 동계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논 ○ 지원대상: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지급단가: 논이모작 50만원/ha
친환경 농업직불제 (‘99~)	○ 지원목적: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보전 ○ 지원대상: 친환경인증 농가 대상(유기 5년, 무농약 3년) ○ 논 지원단가: 유기 70만원/ha, 무농약 50, 유기지속 35(‘18년~) ○ 밭 지원단가: (과수)유기 140만원/ha, 무농약 120, 유기지속 70(‘18년~) (채소·특작·기타)유기 130만원/ha, 무농약 110, 유기지속 65(‘18년~)
친환경안전 축산물직불제 (‘09~)	○ 지원목적: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보전 ○ 지원대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지원단가: 한우170 천원/두, 돼지16 천원/두, 육계200 원/마리, 젖소(우유) 50원/L, 산란계(계란) 10원/개, 오리 400원/마리, 오리알 20원/개 등
경관보전직불제 (‘05~)	○ 지원목적: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한 농촌경관 조성 ○ 지원대상: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된 농지(경관작물 2ha 이상, 준경관작물 10ha 이상) ○ 지원단가: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ha, 준경관초지: 45/ha
경영이양직불제 (‘97~)	○ 지원목적: 65~74세 농업인 농지 이양으로 고령은퇴농 소득안정 도모 ○ 대상농지: 진흥지역 내 전·답·과수원, 진흥지역 밖 경지정리된 전·답·과수원 등으로 경영이양 이전 3년 이상 소유한 농지 ○ 지원대상: 65~74세, 영농능력 10년 이상인 농업인 ○ 지원단가(지급기간): 매도 330만원/ha, 임대 250만원/ha(2~10년 지급)
영농정착지원사업 (‘18~)	○ 지원목적: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을 선발하여 창업과 초기 경영안정화를 통한 농업·농촌 정착 지원 ○ 지원대상: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예비농업인 포함) ○ 지원금액: 선발인원에게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18~’22: 100만원)) 지원

□ 2020년 이후 농업직불제

종 류 ('24년 예산)		지급 기준 및 지원 단가 + 지급현황('23)																								
공익 직불제 ('20~) (29,00 0억원)	기본형 직불제 (26,335억원)	<기본형 직불제, 26,335억원('24)> ○ 지원목적: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 ○ 대상농지: 과거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 등 * (쌀직불)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 지원대상: ①후계·전업농, 전업농육성대상자, ②'16-'19년 기존 직불금 수령자, ③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법인 4천 5백만원 이상) ○ 지원단가 <table><tr><th rowspan="2">구간 단계</th><th rowspan="2">소농 직불금 (0.5ha 이하)</th><th colspan="3">면적 직불금(만원/ha)</th></tr><tr><th>0.1~2ha</th><th>2~6ha</th><th>6~30ha</th></tr><tr><td>논·밭 진흥</td><td rowspan="3">130만원/가구</td><td>205</td><td>197</td><td>189</td></tr><tr><td>논 비진흥</td><td>178</td><td>170</td><td>162</td></tr><tr><td>밭 비진흥</td><td>134</td><td>117</td><td>100</td></tr></table> ○ 지급건수('23): 1,285천건(소농 490, 면적 795) ○ 지급면적('23): 1,109천ha(소농 153, 면적 956) ○ 지급액('23): 23,018억원(소농 5,785, 면적 17,143)				구간 단계	소농 직불금 (0.5ha 이하)	면적 직불금(만원/ha)			0.1~2ha	2~6ha	6~30ha	논·밭 진흥	130만원/가구	205	197	189	논 비진흥	178	170	162	밭 비진흥	134	117	100
	구간 단계	소농 직불금 (0.5ha 이하)	면적 직불금(만원/ha)																							
			0.1~2ha	2~6ha	6~30ha																					
논·밭 진흥	130만원/가구	205	197	189																						
논 비진흥		178	170	162																						
밭 비진흥		134	117	100																						
사업비· 이행점검비 (388억원)	<사업비: 104억원, 이행점검비: 284억원('24)> ○ 지원목적: ① 공익직불 신청·접수·지급에 필요한 지자체 행정경비, 홍보, 연구용역비 등 ② 준수사항 이행점검, 부정수급 명예감시원 활동비 등 ○ 집행액('23): (사업비) 116, (이행점검비) 249																									
선택형 직불제 (2,277억원)	<전략작물직불, 1,865억원('24), ~'22까지 논활용직불> ○ 지원목적: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에서 식량자급률의 증진, 벼 재배면적 조정 등을 위해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차등 지원 * (동계작물 단일재배) 1ha당 50만원, (하계작물 단일재배) 가루쌀·두류 1ha당 200만원, 하계조사료 1ha당 430만원, 옥수수 100 (전략작물 이모작 재배) 동계 밀·동계조사료 재배 후 하계에 논콩·가루쌀 이모작하는 경우 1ha당 100만원 추가 지급(350만원/ha) ○ '23년 지급건수-면적-지급액: 73천건-125천ha-1,080억원 <친환경농업직불제, 228억원('24)> ○ 지급건수('23): 33천건 ○ 지급면적('23): 33천ha ○ 지급액('23): 210억원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16억원('24)> ○ 지급건수('23): 21호 ○ 지급액('23): 4억원 <경관보전직불제, 168억원('24)> ○ 지급건수('23): 11천건 ○ 지급면적('23): 13천ha ○ 지급액('23): 85억원																									

<최근 3년간 공익직불금 지급 결과: 2021~2023년>

(단위: 천ha, 천건, 억원)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대상면적	지급대상	지급액	대상면적	지급대상	지급액	대상면적	지급대상	지급액
기본형 직불제	1,083	1,122	22,268	1,058	1,129	21,943	1,109	1,285	23,018
－ 소농직불	146	450	5,399	144	450	5,405	153	490	5,875
－ 면적직불	937	672	16,869	914	679	16,538	956	795	17,143
선택형 직불제	143	94	819	131	96	741	169	119	1,379
－ 친환경직불 (농업+축산)	36	36	255	33	35	228	33	33 (축산2건)	214
－ 경관보전직불	14	11	91	13	11	86	11	11	85
－ 전략작물직불 (~'22 논활용직불)	93	47	473	85	50	427	125	73	1,08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자료 2]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⁵⁾

< 주요 전략작물 및 지원 목적 >

구분	전략작물직불 지원 목적
가루쌀	수입밀 대체가능, 일반벼 대신 재배
논콩	낮은 자급률('22: 28.6%), 일반벼 대신 재배
밀	곡물 중 소비 비중은 증가하나 자급률은 저조('22: 1.3%)

□ 대상 작물 및 지원 단가

- 기존 논활용직불 대상(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및 사료작물)에 하계작물(두류, 가루쌀, 조사료, 옥수수)이 추가
- 전략작물직불금은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ha당 50만원 ▷여름철에 두류·가루쌀은 200만원, 조사료는 430만원, 옥수수는 100만원 ▷겨울철에 밀·조사료와 여름철에 두류·가루쌀을 이모작하면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

□ 2023년도 추진 현황

- 73천 경영체가 125.2천ha를 이행, 목표 127.0천ha 대비 98.6% 달성
 - (동계) 99.2천ha(67천 경영체) 이행, 목표 100천ha 대비 99.2%
 - * 밀 8.9천ha, 조사료 66.0, 식량작물(보리, 귀리 등) 24.2
 - (하계) 26.0ha(25천 경영체) 이행, 목표 27천ha 대비 96.4%
 - * 가루쌀 2.0천ha, 논콩 18.6, 조사료 5.3
- ** 밥쌀용벼 재배감축 면적: 13.4천ha(가루쌀 2.0, 논콩 6.0, 조사료 5.3),

<'23년도 전략작물직불금 추진 현황>

(단위: 천ha, %)

구분	합계	하계작물				동계작물			
		소계	가루쌀	논콩	조사료	소계	밀	조사료	기타 식량
목표	127.0	27.0	2.0	18.0	7.0	100.0	12.0	60.0	28.0
실적	125.2	26.0	2.0	18.6	5.3	99.2	8.9	66.1	24.2
대비	99	96	102	104	76	99	74	110	87

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359호), 2023.6.에서 재인용

- (이모작) 9.3천ha 등록, 목표 12천ha 대비 77.5%

<전략작물직불 중 이모작 직불 신청현황>

품목		면적	
동계	하계	면적(ha)	비율(%)
합계		9,313	100
밀	가루쌀	884	9.5
	논콩	2,555	27.4
조사료	가루쌀	534	5.7
	논콩	5,340	57.3

[참고자료 3] 탄소중립직불제 도입 방향(안)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농업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추가비용 등을 보전하는 프로그램 도입 검토

□ (지원대상) 농업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종·축산분야의 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검증되고 이행이 용이한 활동을 중심으로 지원

*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원 비중(%,'18): (경종) 53.1, (축산) 42.4, (시설농업) 4.5

- 국가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에 제시된 활동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추진 후 감축 효과성 등 검증
- 향후 온실가스 배출계수가 개발·등록되는 활동 추가

< 탄소배출 저감 활동 >

구분	온실가스 발생원인 및 저감 방법
경종	논에 물을 대면 유기물(벼짚, 퇴비 등)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면서 메탄 발생 → 모내기 이후 2주 이상 용수 공급 중단, 8~9월 논물을 얇게 대기(2~3cm)
축산	사료가 장내에서 소화되면서 메탄 발생(소), 가축분뇨로 아산화질소 발생(돼지) → 가축에게 저메탄사료(소) 및 질소저감사료(돼지) 급여

□ (지원방식) 활동별 직·간접적인 추가비용에 기반하여 지원단가를 산정하고, 규모화된 경영체 등을 중심으로 추진

□ (도입계획) 경지면적이 일정수준 이상인 농업인단체와 축산업 사육허가를 취득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프로그램 도입 기반 마련

- 시범사업을 통해 활동별 이행 수준, 탄소배출 저감효과 등을 분석하여 프로그램 보완

[참고자료 4]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 개요 및 운영예산

- 공익직불사업의 신청·접수부터 자격검증, 정보공개, 준수사항 이행점검, 부정수급 관리, 지급까지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
 - 근거: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36조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시스템 명칭: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www.agrix.go.kr)
 - * 농식품부의 농업경영체 등록관리, 보조사업(공익직불사업 포함), 융자사업 등 약 142여 개 사업을 시스템을 통해 관리
- 구축 시기: 종전에 쌀·밭·조건불리직불사업을 개별로 운영하다가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라 시스템 구축·운영('20년~)

< 시스템 기능 개선 추진 경과 >

- * 법령에서 정한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자격요건에 대하여 각종 공적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자동으로 검증하는 시스템 구축·운영('21년~)
- * 인터넷,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운영('22년~)
- * 공익직불제 적용대상 농업인의 지급 가능성 확인하고 사전에 안내(법 제6조의2 신설, '22.10.18.)하기 위하여 사전검증시스템 구축·운영('23년~)

- 사용자: 전국 시·군·구, 읍·면·동 공익직불 담당자
- 목적: 원활한 사업운행을 위하여 자격검증, 신청·접수, 준수사항 이행점검, 부정수급 등 정보 관리
- '21~'24년 공익직불시스템 유지·보수사업 예산은 아래와 같음
 - 사업정보: 직불제이행점검(1071-301) 세부사업 > “준수사항 관련 업무 추진 및 부정수급 방지” 내역사업 > 시스템 유지·보수사업(민간경상보조)
 - 최근 4년간 예산: ('21년) 382백만원, ('22) 1,042, ('23) 1,442, ('24) 1,571

<공익직불시스템 유지·보수사업 예산: 2021~2024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시스템 유지·보수	382	1,042	1,442	1,571
주요내역	●Agrix콜센터: 232 ●직불제이행점검 시스템 구축: 150	●Agrix콜센터: 232 ●직불제이행점검 시스템 구축: 150 ●통합검증시스템 기능개선: 660	●Agrix콜센터: 232 ●직불제이행점검 시스템 구축: 150 ●통합검증시스템 기능개선: 660 ●문자발송 등 시스템 지원: 400	●Agrix콜센터: 361 ●선택직불제 통합: 660 ●이행점검 시스템 개선: 150 ●문자발송 등 시스템 지원: 400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 기본직불금 신청접수 관리 화면>